

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4월 4일
- 회부일자 : 2011년 4월 7일

3. 제안이유

- 근거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,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존속 필요성 상실로 폐지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를 폐지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
 - 근거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주택법 및 같은법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면서,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명시되었던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존속 필요성의 상실로 인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 -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
- ※ 주택건설촉진법 → 주택법(전부개정) : 2003. 5. 29(시행 2003.11.30)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→주택법시행령(전부개정) : 2003.11.29(시행 2003.11.30)